

인감등록절차

★접수창구...이타바시구내의 구민사무소 또는 구청 1층 ③번창구

인감등록을 마친 후에는 구민사무소에서 인감등록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다

문의
이타바시구청호적주민과주민이동계
☎173-8501

본인이 직접 창구에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질병 등의 부득이한 경우)
1. 우편으로 본인확인방법 (원칙)	2.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확인방법	3. 보증인을 세워서 본인확인방법	
등록완료까지 며칠 소요됩니다			등록완료까지 며칠 소요됩니다
준비하실 것은 등록할 인감 + 본인확인자료 건강보험증·간호보험증· 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증 진찰권·사원증·통장· 현금카드·신용카드· 학생증·연금수첩 등	준비하실 것은 등록할 인감 + 관공서가 발행한 얼굴사진이 첨부 면허증·허가증·신분증명서 등 ●위조방지를 위해 사진을 압인 하거나 특수가공한 것 예) 운전면허증 여권 특별영주자증명서 재류카드 마이넘버카드 (사진부착) 등	준비하실 것은 등록할 인감 + 신청서의 보증서란에 보증인 (동경도내에 인감등록되어 있는 분) 이 서명 또는 보증인의 등록 인감을 날인한 것 + 보증인의 인감등록증명서 (3개월이내의 것) ※보증인이 이타바시구 주민 의 경우는 인감등록증명서 의 첨부 불필요함 + 본인확인자료	준비하실 것은 등록할 인감 + 위임장 (아래의 「위임장 서식예」를 참고하세요) ※신청서에 본인의 주소·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란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적어 주세요. + 대리인의 본인확인자료

현
주
우
송
소
로
↓
조
회
서

교
부
↓
당
일

↓
조
회
서
현
주
우
송
소
로

「신청한 창구」에
답변서
(조회서 하단에 서명)
+
· 본인의 경우
등록인감+본인확인자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본인확인자료



「신청한 창구」에
답변서
(조회서 하단에 서명)
+
· 본인의 경우
등록인감+본인확인자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도장+
대리인의 본인확인자료

「인감등록증」 발행
※등록수수료 **100엔**

인감등록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인감등록증」을 지참하십시오. (1통 300엔)
※대리인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은 필요없지만 신청서에 본인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한 경우,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위임장 서식예」

위 임 장
令和〇〇년〇〇월〇〇일

(신청인)
주소 板橋...丁目・番・号
성명 板橋 太郎 印 (등록인감)

본인은 아래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대리인)
주소 板橋...丁目・番・号
성명 板橋 花子

★위임장 작성 방법

1. 위임장은 「신청자본인」이 직접 작성해 주십시오. 또한 복사하거나 전문을 워드로 작성한 것 등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왼쪽 서식예의 (※) 란은 다음 중 한 가지를 기입해 주십시오.
 - 인감등록신청 (등록 신청을 할 때)
 - 인감등록증 수령 (답변서를 가지고 인감등록증을 수령할 때)
 - 인감등록증교환신청
 - 인감등록증분실신고
 - 인감등록폐지신청
3. 용지는 편지지 (또는 A4) 정도의 크기로 부탁드립니다.
4. 주소·이름은 약자를 사용하지 마시고 주민표·재류카드 등에 기재된 대로 정확하게 써 주십시오.
5. 위임장은 신청·신고 각각에 대해 1통씩 준비해 주십시오.